

대통령령 제 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,242원으로 한다(2025년 6월 30일까지는 톤당 16,730원으로 한다)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관세법」

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「관세법」

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 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략) 3.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 연가스: 톤당 3,800원. <u>다만,</u> <u>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</u> <u>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</u> <u>24,242원으로 한다.</u> 4. · 5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. <u>다만,</u> <u>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</u> <u>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</u> <u>24,242원으로 한다(2025년 6월</u> <u>30일까지는 톤당 16,730원으</u> <u>로 한다).</u> 4. · 5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36